

[사업신청 유의사항]

- 접수방법 : 상단의 [세부사업]의 각 신청과제를 클릭하여 신청페이지를 통해 접수
- 작성서식 : [첨부파일]의 [서식 모음]중 해당 파일 작성 후 업로드
- 공고 및 첨부파일(신청매뉴얼, 세부운영기준) 꼼꼼히 읽은 뒤 접수
- 모든 지원사업 신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 접수(이메일 접수 불가)
- 접수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과제명 및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
- ※ 사업 신청시 지원제외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, 해당 내용 미숙지 및 정보 오기입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.

2023년 [중부권역]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 공고(1차)

1 사업개요

- 지원규모 : 기업 당 연간 최대 2,000만 원 한도 내 지원
- 신청기간 : 2023. 3. 29(수) ~ 4. 12(수), 18시
 - ※ 최종 2023년 11월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가능
- 사업완료 기간 : 2023. 선정일 ~ 11월 30일
- 모집 시·군 : 군포시, 의왕시, 오산시, 화성시, 수원시
- 지원대상 : 사업비 출연 5개 시·군 소재 전년도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영위기업
 - ①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
 - ②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·군 내 소재한 기업
- ※ 지식서비스 산업 범위 : 맨 하단의 별표1 참조
- 우대사항
 - 사업비 출연 연계시·군 소재 창업보육센터,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
 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우대

2 사업 진행절차

- 선정통보 : 사업 마감 후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나,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- 사업완료 : 당초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행기간 이내 사업완료를 원칙으로 함

신청 및 평가	지원신청서 작성 (신청기업)	지원신청서 작성(첨부양식 참조)
	신청서 제출(이지비즈 온라인) (신청기업 → GBSA)	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GBSA 접수(온라인) ※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의 [신청 매뉴얼] 확인
	평가 및 지원결정	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
↓		
과제진행	과제수행	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(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)
↓		
지원금 지급	비용 완납 (신청기업)	-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- 온라인입금 규정준수(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)
	지원금신청서 제출 (이지비즈 온라인) (신청기업 → GBSA)	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온라인 제출(마이페이지에서)
	지원금 지급 (GBSA→신청기업)	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

3 신청과제 및 지원내용

- 최대 2,000만원 이내에서 각 단위사업별 복수 신청 가능. (단, 동일과제 중복신청 불가)
- 총 비용의 50%(각 사업별 한도금액 이내 지원), 기업 자부담 50%
 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

※ 사업형태 : 사전신청 과목 및 사후신청 과목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사후신청 과목은 공고일 기준, 올해 이미 사업진행이 완료된 것에 대하여 지원하는 과제
(2023년 이전에 완료된 것은 제외)
- 사후신청 과목
 - 디자인 및 상표 과목 : 출원이 완료 되어 출원서가 발급되고 최종 지출 증빙문서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
 - 해외규격 인증 : 해외 규격 인증이 최종 완료 및 인증서가 발급 되고나서 최종 지출 증빙문서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
 - 시험분석 : 시험분석 결과(리포트)가 발급되고 나서 최종 지출 증빙문서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

사업구분	지원한도(총 비용의 50% 지원, 건당 한도 확인)	비 고
지식재산권출원	· 국내특허 최대 520만원, 실용신안 최대 360만원 · 해외특허 최대 500만원, 해외PCT 최대 500만원	
	· 국내상표 최대 200만원, 해외상표 최대 500만원 · 국내 디자인 최대 280만원	※ 사후지원 과목 (3분기 접수 예정)
	· 산업기술정보제공 최대 200만원 이내	※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모집 진행
규격인증획득	· 국내인증 최대 300만원, 해외인증 최대 700만원(사후지원)	※ 사후지원 과목 (3분기 접수 예정)
제품생산지원	· 시제품 개발 지원(목업) 최대 500만원	※ 금형 제작 모집 (2분기 접수 예정)
	· 시험분석 최대 200만원	※ 사후지원 과목 (3분기 접수 예정)
판로개척 지원	· 국내 전시·박람회 참가 최대 300만원	
	· 해외 전시·박람회 참가 최대 500만원	
	· 홈페이지 제작 최대 200만원	
	· 카탈로그 제작 지원 최대 200만원	
	· 모바일 앱 제작 비용 지원 최대 200만원	
	· 제품 패키지 개선 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	
	· 온라인 회의시스템(소규모) 도입 비용 지원 최대 200만원	
	국내 홍보·판로 지원	· 전문잡지 광고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 · 홍보동영상(일반) 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 · 홍보동영상(3D) 비용 지원 최대 400만원

○ 제출서식 및 서류(※ 세부서류는 각 과제별 공고문 참조, 서류 일체 PDF형식으로 제출)

구분	제출서류
필수	※ 온라인 첨부 ① 단위사업별 신청서(온라인 작성) ②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③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작성)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(국세청 발급) ⑤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⑥ 해당사업 견적서 ⑦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 또는 세무서) 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(정부24 발급) *유효기간 확인
가점 항목	※ 해당시 첨부 · 공장등록증명서(정부24 발급) ·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'20-'21년, '21년-'22년 각 12월 귀속분) · 국내·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·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

4 유의사항

○ 공통 유의사항

- 지원 결정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되며, 사업수행 중도 포기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됨
- 서류 검토 중 지원결정 통보(일) 이전에 시행한 과제 또는 타기관 사업과 중복사업임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 지원 결정 취소됨
- 사업완료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수행기간을 원칙으로 함
- 사전신청 사업과 사후신청사업 유의하여 신청 요망
- 온라인 수정요청 시 기업회원정보에 기재된 메일 및 전화번호로 통지되므로 기업 회원 정보 업데이트 필수
-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, 전전년도(21년도)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(22년도, 국세청발급)을 함께 제출
- 국세,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,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
-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·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 발급) 제출
(※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)
- 온라인신청서 실적입력 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일치하게 기입
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,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(www.bi.go.kr(창업넷) 확인), 시/군 지정 창업보육센터(입주계약서) 입주여부 확인
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(17개소) 입주기업 신청시, 경기창업벤처 센터(입주계약서) 입주여부 확인

○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

-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업체를 선정 하여야 함.
-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·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.
-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

○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

-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(수행기간, 대행업체)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,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.
※ 지원결정금액(추가비용은 기업부담)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하며, 미 승인된 변경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.
-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

○ 지원결정 취소사항

-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·완료된 경우(사후신청 사업은 제외)
-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- **사업완료 시점 선정기업이 어떠한 답변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완료 제출자료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(과제)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 통보 후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음**
-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, 지출한 비용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
-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
- **사업 추진 중 또는 사업완료 시점에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 (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)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**
-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,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
-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신청기업에 부도,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진흥원 타 지원사업에서 소송 중인 기업은 선정 취소 될 수 있음
-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

○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

-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.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(미발행 대상기업) 미사용 사유서 제출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임
 - ※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(부가세 포함)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, 완료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,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
-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
-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

○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

- 사업완료는 당초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행기간 이내 사업완료를 원칙으로 함. 단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담당자 공문접수 통해서만 연장 가능
- 완료보고서는 선정된 과제 종료 후 최종적으로 본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사업 완료 일 이전까지 제출서류 및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
 - ① 제출서류 : 지원금지급신청서,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
 - ② 지출증빙 :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
-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

○ 위법·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[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]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- 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시)
 - ③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-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- 진흥원 타 지원사업에서 소송 중인 기업은 선정 취소 될 수 있음
-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

○ 문의처

- 중부권역 관련 문의

권역(부서)	지역	담당자	전화번호
중부 (SOS지원팀)	군포시, 의왕시, 오산시, 화성시, 수원시	문지운 대리	031-259-6287

- 산업기술정보제공 지원 :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) 문의처

기관명	담당자	전화번호
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)	구영덕 책임연구원	02-3299-6035

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

지식서비스산업 범위

해당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○ 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
○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	581
○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5911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5912
○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59201
○ 전기통신업	612
○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
○ 정보서비스업	63
○ 연구개발업	70
○ 광고업	713
○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714
○ 경영컨설팅업	71531
○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72
○ 전문디자인업	732
○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	73902
○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73903
○ 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	73904
○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909
○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74100
○ 보안시스템 서비스업	75320
○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75991
○ 전시 및 행사 대행업	75992
○ 포장 및 충전업	75994

※ 산업 업종코드 확인방법

☞ <http://kostat.go.kr>(통계청사이트) → 통계분류포털 → 한국표준산업분류 → 검색 → 분류검색
 →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→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

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

제외 업종 총괄표

업 종	품목코드	해 당 업 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주류, 담배 증개업
	46109中	골동품, 귀금속 증개업
	46209中	잎담배 도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6416中	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)
	46463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
	4764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
	47859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, 성인용품도소매업
음식점 및 주점업	56211~2	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2中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63999中	온라인게임아이템증개업, 게임아바타증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
부동산업	68	부동산업,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
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69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71531中	기획부동산업
사업지원 서비스업	75330中	흥신소
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75999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2中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49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2中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	96992	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96999中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
※ 상기 이외 표기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